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6653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665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312822 판결

##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판결선고 2024. 4. 25.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312822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9. 6. 25.부터 1년이 지난 2021. 2. 23.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B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2020. 4. 14.에 개시되었다가 2021. 1. 13.에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위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